

#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기준

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기준 :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% 또는 5%

구분	10% 가산	5% 가산
독립 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애국지사 본인</li> <li>• 순국선열 유족</li> <li>•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애국지사 가족</li> <li>•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</li> <li>•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</li> </ul>
국가 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유공자 본인</li> <li>•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 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유공자의 가족</li> <li>•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</li> <li>•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제매 중 1인</li> <li>• 전몰·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</li> </ul>
5·18 민주 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</li> <li>• 기타 5·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</li> <li>• 5·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</li> <li>• 5·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·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</li> <li>• 사망한 5·18 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</li> </ul>
특수임무 수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 본인</li> <li>•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</li> <li>•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</li> <li>•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</li> </ul>
고엽제 휴유의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</li> </ul>
보훈보상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</li> <li>•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</li> </ul>

장애인 : 전형 단계별 만점의 3% (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불가)

가점	항목
3%가산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